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	주 30411-448 (전화: 490. 3380)	시행상 시별위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 5. 3. 1.	구 청 장
수신처 보존기간		
시행일자		
보부첨장	김민서	문서통제
조기	도시정비국장	
과	주택과장	
기안책임자	배한성	
경유	기안첨조	
수신	발신명의	
참조		
제목	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	
	( 제 1 안 ) 내부첨제	
	1. 우리구 관내 면목 동 507번지 3호 외 1필지 지상에	
	변점과 같이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주택건설 추	
	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코자 합니다.	
	2. 승인내역	
	가. 사업주체 : 도흥건설(주) 이연웅	
	나. 사업위치 : 면목 507번지 3, 6호	
	다. 규모 : 민영주택 3층 1동 24세대(미다세대주택)	
	라. 내역 : 변점 동 3세대.	
	마. 기타 : 승인조건 변점	
	합부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	
	( 제 2 안 )	
	수신 : 도흥건설(주) 대표 이연웅 (도대분구 신서로 7-22)	
	제목 : 동 가	

원본은 구청에 보관

민영주택건설사업

지양행  
승명

1. 귀하께서 우리구역 제주혁신중랑구 일부토 57번지  
의 1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야 주택건설  
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.

2. 동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 
따라 건축법 제 5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계획법 제 4조, 제  
12조, 제 24조,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승인 또는 허가를 가함  
하오니 위 관련 제법규에 의거 우리구의 지도감독은 바야, 착공, 중간  
지도 및 준공보고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3. 동 사업시행에 따른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서본  
교부코져 하오니 면허서 및 지하철근 콘크리트 마감면증은 지참 교부 받으  
시기 바랍니다.

가. 승인개요

구 분	구 모			택 지 면 적	건 축 연 면 적	건 대 면 적	용 적 율	비 고
	동수	층수	가구수					
연 립	2	3	27	1,310.8 <sup>m<sup>2</sup></sup>	1,779.98 <sup>m<sup>2</sup></sup>	34.97	100.97	

첨 부 : 승인조건 1부 ( 별첨 )

( 제 3 안 )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동 구

1. 아테와 같이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 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 5조의 건축허가 및  
도시계획법 제 4조, 제 12조, 제 24조, 제 25조에 의한 건설승인 또는  
허가를 가함 하는 사업계획 승인은 허가기 통보 하오니 업무 수행에  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승인내역

가. 사업주체 : 동흥건설(주) 이영웅
( 동대문구 신설동97-22 )
나. 건설위치 : 중랑구 면목동507번지 3호의 1필지
다. 건설내용 : ( 제2안 가항 이기시행 )
수신처 : 서울시교육감, 한국전력주식회사,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 사장, 동대문소방서장.
( 제4안 )
수신 : 서울특별시
참조 : 주택기획과장
제목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처리
1. 주택30411-140(87.2.11)호와 관련입니다.
2. 별첨과 같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
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사업계획 승인이 있었기 보고합니다.
가. 승인내용 : ( 제2안 가항 이기시행 )
첨부 : 사업계획 승인 결과 보고서 1부.
승인조건 1부.
( 제5안 )
수신 : 서울특별시
참조 : 공보관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1.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사업계획 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505-25(2-1)일(1)을  
85. 9. 9. 승인

190mm x 268mm 인쇄용지 23g/60g/m<sup>2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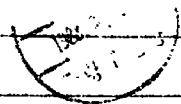
첨 부 : 1.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 내역	2부.
2. 민영주택 사업계획 고시안	2부.
고 시 안	
서울특별시 계 호	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07번지 3호의 1/1필지 지상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승인하오	
법령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	
19 88 . 7 .	
서울특별시 장	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	
2. 사업주체 : 동흥건설 ( 주 ) 이 영 용	
3.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	
가. 위 치 : 중랑구 면목동 507번지 3호의 1/1필지	
나. 면적면적 : 1,310.8 M <sup>2</sup>	
다. 규 모 : 연립주택 3층 1동 24세대만다식대우 아파트 3세대.	
4. 사업기간 : 1988. 7 - 89. 7.	
( 제 6 인 )	
수 신 : 수신처 참조	
제 목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	
1. 우림구에 제출된 중랑구 면목 동 507 번지 3 호의 1/1필지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택 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 4조, 제 19조, 제 24조,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	
승인 또는 허가를 가할 수 있는 가의 소부된 서경도서의 의거 그 밖의 사항은 미	

규정에 따라 기초 및 중간 검사를 물론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 
일것이며,

2. 사업승인 내역 및 승인조건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등에 위  
배됨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철저를 기할것.

- 첨 부 : 1)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 1부.  
2) 공 고 안 1부.  
3) 승 인 조 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정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토목과, 수도공사와, 환경과  
면무3동 사무소.

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제 호

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

면목동 507 번지 3 호의 1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8. 7 . .

서울특별시 광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

2. 사업주체 : 도원건설(주) 이 영 용

3. 사업시행지 및 위치 면적 규모

가. 위치 : 중랑구 면목동 507 번지 2 호의 1 필지

나. 대지면적 : 1,310.21㎡

다. 규모 : 연면적 2호 1도 24식㎡

4. 사업기간 : 1988. 7. 1 ~ 1988. 7. 31

= = = = =  
**민영주목사업기회승인내역**  
 = = = = =

1. 사업주체 : 동흥건설 (주) 이영웅
2. 사업위치 : 중리구 변복동 507번지 3, 6호
3. 사업량 : 연립주택 2층 1도 24세대
4. 사업비 : 마세택주택 2층 1도 24세대  
 849,354,900원
5. 도당규모 및 사업비 : 별첨
6. 재 원 :
  - (1) 국민주택자금 : 원
  - (2) 금융자금 : 351,000 원
  - (3) 입주자부담금 : 원
  - (4) 사업주체자금 : 498,354 원
  - (5) 주택은행민영자금 : 원
  - (6) 기타자금 : 원
7. 사업기간 : ' 환공 : 80. 7.  
 ' 준공 : 80. 7.
8.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: 별첨
9. 조건 : 별첨